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산업과 소관)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6. 6. 14

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1996. 6. 1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입사회)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(96. 6. 20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이부영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2일

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어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기 위
 임된 사무를 관련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2조 별표 제1항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실과별·위임사무명 및 근거법 적
 용란 중 산업과 소관 업무를 농지법에 맞게 조정하여
- 농업인주택, 농업용시설, 농수산물유통·가공시설의 부지전용,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 등
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의 부지전용,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
 시설의 부지전용 등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무와
-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,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
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위임하려고 하려는 사무가 전부터 위임하고 있던 사무입니까?	○ 전에도 위임하고 있던 사무였는데 관련 법류 가 폐지되고 농지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16호
의결	96. 6. 28
년월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4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(94. 12. 22 법률 제4817호)·동법시행령(95. 12. 22 대통령령 제14835호)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(95. 12.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)으로 기 위임된 사무를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

주요골자

- 실과별·위임사무명 및 근거법적용란 중 산업과 소관 업무를 농지법에 맞게 개정(안 제2조)
 -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(안 별지 위임사무명 1호)
 - 농업인 주택, 농업용 시설, 농수산물유통·가공시설의 부지전용
 -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의 부지전용
 -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의 부지전용
 -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위임(안 별지 위임사무명 2호)
 - 농지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(안 별지 위임사무명 3호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별표) 실과별·위임사무명 및 근거법적용란 중 산업과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실과명	위임사무명	근거법 적용
산업과	1.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농업인 주택, 농업용 시설, 농수산물 유통·가공시설의 부지전용 나.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의 부지전용 다.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시설의 부지전용 2.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.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	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·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농지법 제37조, 제42조 농지법 제56조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	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

<p>1. 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1,500㎡ 이하의 농가주 택, 농업용 시설의 설치</p> <p>나. 3,000㎡ 이하의 어린이놀 이터, 마을회관 등 농어민 공동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</p> <p>다. 3,300㎡ 이하의 고정식 온실의 설치</p> <p>라. 1,500㎡ 이하의 양어장, 양 식장 등 어업용시설의 설 치</p>	<p>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47 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57조</p>	<p>1.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무</p> <p>가. 농업인주택, 농업용시설, 농수산물유통·가공시설 의 부지전용</p> <p>나.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편 익시설의 부지전용</p> <p>다.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전용</p>	<p>농지법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 40 조· 제 41조, 동법시행규칙 제30조</p>
<p>2. 농지전용 신고 토지의 타목 적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</p>	<p>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47 조제3항</p>	<p>2.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</p>	<p>농지법 제37조, 제42조</p>
<p>3. 관상수 재배 신고에 관한 사 무</p>	<p>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47 조제2항</p>	<p>3.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 사</p>	<p>농지법 제56조</p>
<p>4. 대리경작 지시 등에 관한 다 음의 사무</p> <p>가. 대리경작자의 지정</p>	<p>농지의보전및 이용에관한법 제10조.</p>		

현 행		개 정 안	
위 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적용
<u>나. 대리경작자지정해지</u>	<u>동법 제11조제</u> <u>3항</u>		
<u>다. 대리경작자의 지정통지와</u> <u>고지</u>	<u>동법 제10조제</u> <u>2항</u>		
<u>라. 경작지시서 발부</u>	<u>동법 제8조제2</u> <u>항</u>		
<u>마. 대리경작자 지정에 따른</u> <u>이의신청 처리</u>	<u>동법시행령 제</u> <u>15조제2항</u>		
<u>5. 관할구역 내 불법전용농지조</u> <u>사</u>	<u>농지의보전및</u> <u>이용에관한법</u>		
<u>6. 농지이용상황의 조사 및 지</u> <u>도</u>	<u>시행령 제11조</u> <u>동법시행령제</u> <u>13조</u>		